

장기요양급여 이용 정보

수 지 원

운영규정 개요

1. 입소정원 : 29명

2. 입소계약

(1) 입소대상

-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~5등급 **시설급여**를 받은 자
- 나.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
- 다.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, 부양 의무 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

(2) 입소절차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~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.

※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(3) 구비서류

수지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
- 가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- 나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- 다. 입소이용의뢰서(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)
- 라.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
- 마. 장기요양급여계약서-동의서 포함
- 바.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사.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

(4) 입소 계약

① 계약대상자 -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.

② 계약기간 -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상호협의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.

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-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,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. 만일,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,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,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.

3.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

(1)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
-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- 간호(조무)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- 간호(조무)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(2)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-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-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

가.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나.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.

다.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(3)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
-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-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수지원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.

(4)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
- 가벼운 질병 등(내과, 이비인후과 등)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지원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 단,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-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(정기, 수시)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.

5.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-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
-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.

4. 시설물 사용 상 주의

-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,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.

-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단,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.

- 수지원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.

종사자 근무체계

직위(직종)	인원	근무형태	업무내용
시설장	1명	주간 (야간비상대기)	시설 전반에 대한 계획, 운영 총괄
사회복지사	2명	주간	(1) 입소자 건강유지,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. (2) 입소자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·지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전체 사무·행정
간호조무사	1명	주간	입소자의 병력사항, 건강수준, 의약, 외래동행, 투약, 입·퇴원, 응급상황 등의 관리 및 간호서비스 일체
요양보호사	13명	주·야간 8명 (2교대)	입소자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. (1)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(2) 시설생활환경, 위생, 청결, 급여제공의 기록·관리

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

- 시설급여 - 노인요양시설
- 장기요양등급 1, 2, 3, 4, 5

월 입소 비용					
구분			1등급	2등급	3,4,5등급
30일 기준	본인부담금	20%	542,700	503,460	475,440
		12%	325,620	302,070	285,260
		8%	217,080	201,380	190,170
	식재료비(간식포함)		315,000	315,000	315,000
	합 계	20%	857,700	818,460	790,440
		12%	640,620	617,070	600,260
		8%	532,080	516,380	505,170

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
1. 식사재료비(간식비포함) - 1식 3,500원 (1일 / 10,500원)
2. 상급침실 이용비 - 없음
3. 이-미용비 - 실비
4. 프로그램 진행비 - 실비 (영화관람등)

4 수지원 시설현황

1. 수지원 시설 규모

(1) 대지면적

- 1,260m²

(2) 건축면적

- 854.19m²

(3) 산책공간 및 텃밭 면적

-1980m²

2. 시설 설비

구 분 시설별	침실	사무실	요양 보호 시설	자원 봉사 시설	의료 및 간호 시설	물리(작업) 치료 시설	프로그 램 실	식당 및 조리 실	비상 재해 대시 설	화장 실	세면 및 목욕 실	세탁장 및 물건 조장
수지원	11	1	1	0	1	1	2	1	0	6	2	1

3. 전문인배상,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

○ 보험사: 현대해상화재보험

○ 보장기간 :2024년 11월 24일 24시 부터 2025년 11월 24일 24시까지

4. 화재보험 가입

○ 보험사: 한화손해보험

○ 보장기간 :2024년 11월 24일 24시 부터 2025년 11월 24일 24시까지

5.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

○ 보험사: 한화손해보험

○ 보장기간 :2024년 11월 24일 24시 부터 2025년 11월 24일 24시까지

6.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

○ 보험사: 현대해상화재보험

○ 보장기간 :2024년 11월 24일 24시 부터 2025년 11월 24일 24시까지